울산광역시 울꾸군 화장장려금 지원에 관한 쪼례안 심사보고서

(의안번호 제274호)

2024년 3월 8일

1. 심사경과

가. 제 출 일 자 : 2024. 2. 22.

나. 제 출 자 : 울주군수

다. 위원회 회부 : 2024. 2. 26.

라. 위원회 심사 : 2024. 3. 7.

2. 제안설명 요지 (제안설명자 : 제순경 노인장애인과장)

가. 제안이유

O 묘지 증가로 인한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고, 장묘문화 개선을 통한 자연 환경 보전을 위하여 화장장려금을 지원하고자 함

나. 주요내용

- 조례 제정목적 및 용어 정의(안 제1조, 제2조)
- O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등(안 제3조, 제4조)
- O 지원신청 및 지원방법(안 제5조, 제6조)

3. 검토보고 요지 (전문위원 김희숙)

- O 화장장려금은 「장사 등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화장장려 시책의 일환으로 국토훼손 방지 등을 위해 화장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는 것으로 지자체별로 지급액, 지급방식이 상이함.
- O 울산의 경우 화장시설을 설치하고 「울산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」 제5조에 따라 울산시민에게 화장시설(승화원) 사용료의 약 80%의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있음.
- 본 제정 조례안은 기피시설인 화장시설이 울주군(삼동면)에 소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울산의 타구와 동일한 사용료 혜택을 받고 있어, 군민에게 화장시설 (승화원) 사용료의 50%를 추가 지원하고자 화장장려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,
- O 상위법령에 지원 근거가 있고, 보건복지부로부터 「화장장려금 지원사업」에 대한 사회보장제도 신설협의 완료 통보(2023. 10. 27.)를 받은 사항으로 조례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.
 - 다만, 안 제3조제1항제3호 '출생 후 12개월 이내 사망한 영아'를 '출생신고를 하지 못했거나 출생 후 12개월 이내 영아' (국민권익위 제도개선안)로, 안 제6조 제목 부분 '지원방법'은 '지급방법'으로 수정하여 의미 전달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고,
 - 또한, 울주군민이 관내 화장시설의 사용이 불가하여 관외 화장시설을 사용하였을 경우의 화장장려금 지원 부분과 안 제3조제1항제4호 단서조항 "다만, 법인묘지에 설치된 분묘의 유골은 사망 당시 군민으로 확인된 사람"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.

4. 심사결과 : 수정가결

- O 수정안 요지
 - 상위법 용어를 사용하여 지원대상을 명확하게 함(안 제3조제1항)
 - 울주군에 체류 신고된 외국인으로 한정(안 제3조제1항제2호)
 - 국민권익위원회 개선안 반영(안 제3조제1항제3호)
 - 화장장려금 지원 제도 불부합 단서 조항 삭제 등(안 제3조제1항제4호)
 - 명확한 의미 전달을 위해 제목을 수정하고 지급기한 변경(안 제6조제1항)

5. 소수익견

- 학업, 직업 등의 이유로 다른 지역에 주소를 둔 미혼자도 부모가 군민일 경우 지워 필요
- 사망자가 일정기간 동안 울주군에 주민등록을 한 경우 지원하도록 제한 필요
- 오래된 분묘의 개장으로 유골이 남아 있지 않아 화장을 하지 못하는 경우 지워 방안 필요
- 체류지 신고된 외국인의 경우 승화원 사용료 적용기준(관내 또는 관외)에 대한 검토 필요함

6. 점부자료 : 수정안 및 수정 대조표

붙임

수정안

울산광역시 울주군 화장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 안 번 호 : 제274호

제안연월일: 2024. 3. 7.

제 안 자: 행정복지위원장

1. 수정이유

O 화장장려금 지원제도에 불부합하는 단서 조항을 삭제하고 국민권익위원회 개선안 반영 및 장려금 지급기한을 단축하며 상위법령에서 사용되는 용어 등으로 조문을 수정함.

2. 수정안 주요골자

- O 상위법인 「장사 등에 관한 법률」제2조제16호 용어를 사용하여 지원대상을 명확하게 함(안 제3조제1항)
- O 울주군에 체류 신고된 외국인으로 한정(안 제3조제1항제2호)
- O 국민권익위원회 개선안 반영(안 제3조제1항제3호)
- O 화장장려금 지원 제도 불부합 단서 조항 삭제 등(안 제3조제1항제4호)
- O 명확한 의미 전달을 위해 제목을 수정하고 장려금 지급기한 변경(안 제6조제1항)

3. 수정안 및 수정 대조표: 따로 붙임

울산광역시 울주군 화장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울산광역시 울주군 화장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 제3조제1항 중 "사람으로"를 "연고자로"하며, 제2호 중 "체류지"를 "군 에 체류지"로, "제3호 중 태아 또는 출생 후 12개월 이내 사망한 영아"를 "태아, 출생신고를 하지 못했거나 출생 후 12개월 이내 영아"로, 제4호 중 "유연고 분묘의 유골. 다만, 법인묘지에 설치된 분묘의 유골은 사망 당시 군 민으로 확인된 사람"을 "연고자가 있는 분묘"로 한다.

제6조의 제목 "(지원방법)"을 "(지급방법)"으로 하며, 같은 조 제1항의 "60일"을 "30일"로 한다.

(그 외 부분은 원안과 같음)

수정 대조표

원 안	수 정 안
제3조(지원대상) ① 화장장려금의 지	제3조(지원대상) ①
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	
에 해당하는 사람의 시신 또는 유	
골을 화장한 <u>사람으로</u> 한다.	<u>연고자로</u>
1. (생 략)	1. (원안과 같음)
2. <u>체류지</u> 신고가 되어있는 외국인	2. 군에 체류지
3. 군민의 <u>태아 또는 출생 후 12개월</u>	3 태아, 출생신고를 하지 못했
이내 사망한 영아	거나 출생 후 12개월 이내 영아
4. 군 관할 구역에 설치된 <u>유연고</u>	4 연고자가 있는 분묘
분묘의 유골. 다만, 법인묘지에 설	
치된 분묘의 유골은 사망 당시군	
민으로 확인된 사람	
제6조(<u>지원방법</u>) ① 군수는 제5조에	제6조(지급방법) ①
따라 신청서가 접수되면 제3조에	
따른 지원대상 등 적격여부를 확인	
한 후 신청일로부터 <u>60일</u> 이내에	<u>30일</u>
신청인의 예금계좌로 화장장려금을	
지급하여야 한다.	